

## 家族関係登録事項別 証明書 交付等 申請書

申請 対象者	姓 名	ハングル : _____ (漢字 : _____ )
	登録基準地	_____
	住民登録番号 (生年月日)	-

申請内容	1. 一般証明書		2. 詳細証明書	
	① 家族関係証明書.....( ) 通	① 家族関係証明書.....( ) 通	② 基本証明書.....( ) 通	② 基本証明書.....( ) 通
	② 基本証明書.....( ) 通	③ 婚姻関係証明書.....( ) 通	③ 婚姻関係証明書.....( ) 通	④ 入養関係証明書.....( ) 通
	③ 婚姻関係証明書.....( ) 通	④ 入養関係証明書.....( ) 通	④ 入養関係証明書.....( ) 通	⑤ 親養子入養関係証明書.....( ) 通
	④ 入養関係証明書.....( ) 通	⑤ 親養子入養関係証明書.....( ) 通	⑤ 親養子入養関係証明書.....( ) 通	
*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청구의 특례(가족관계등록예규 제524호)-신청서 뒷면 작성방법 2번 참고				
3. 特定証明書 ① 基本証明書(特定-親権·後見).....( ) 通				
4. 従前「戸籍法」による除籍 本籍 : _____ 戸主 : _____ 対象者 : _____ の			① 除籍謄本.....( ) 通	
			② 除籍抄本.....( ) 通	

住民登録番 公開申請可否 (後ろ6桁)	<input type="checkbox"/> 全部公開 <input type="checkbox"/> 申請対象者 本人のみ公開	公開申請 事由	<input type="checkbox"/> 1. 申請対象者の住民登録番号を正確に記載された場合 <input type="checkbox"/> 2. 申請人が申請対象者本人または本人の父母、養父母、配偶者、子供および その代理人の場合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	--

請求事由	_____
召命資料	_____

アポストリーユ申請の為の証明書の発給情報転送に関する同意の可否	証明書発給情報の転送に同意します。 <input type="checkbox"/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申 請 人 <sup>2</sup>	姓名	(印) または 署名	生年月日		
	住所			申請人資格	対象者の
				携帯電話番号	

委 任 者	姓名	(印) または 署名	生年月日	
	委任を受けた場合、委任者の姓名および生年月日を記載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(委任状は別途添付)			

受付番号	20 年 月 日	貴下
------	----------	----

* 手数料	登録事項別証明書または除籍謄・抄本1通110円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1. 公證事務所申請対象者が手印を捺した時申請対象者欄に“別紙と 같음”이라고 기재한 후 별지 서식을 이용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신청서와 별지를 간인(서명)하여야 합니다.

2.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본인, 배우자, 직계혈족과 그 대리인의 경우와 뒷면 작성방법 5.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도 청구할 수 있으나, 우편으로 청구할 때에는 등록기준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.

3.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·후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정증명서 교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.

4. 아포스티유란 국내에서 발급한 문서를 다른 국가에 제출하여 증명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국제협약으로서, 주한 공사나 영사의 확인 없이 협약국가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받습니다.

5. 신청인 또는 위임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(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)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\* 법 제117조 3호·제14조 제1항·제2항 및 제42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고서류를 열람하거나 신고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또는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 법 제11조 제6항을 위반하여 발급대상자 아닌 사람에게 고의로 발급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.

\* 발급판서 “시”인 경우에는 “구”가 설치되지 않은 시를 말합니다.